

계룡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189 호
의결년월일	2005. 3. . (제 14 회)

제출일자	2005. 3. .
제출자	계 룡 시 장

1. 개정이유

- 관계법령의 개정과 종전에 승합으로 분류되던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세부담을 완화시키고, 계룡시시세감면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관계법령 및 감면취지에 맞게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법률’로 변경되었고, 국가유공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반복되는 어휘로 조문에 혼란이 있어 간결화(안 제2조제2항).
- 나. 장애인 관련 자동차세 인적 감면 범위를 명확화(안 제3조제1항).
- 다.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개정과 동조례 조항과의 입법 기술성을 고려하여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도서관”을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도서관”으로 “제16조”를 삭제(안 제6조제6호).
- 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폐지로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 부분이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에 포함됨에 따라 관련 조항 삭제(안 제9조제1항제3호).
- 마.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중 전방조정자동차는 소형일반버스 세율적용 및 그 이외는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안 제14조의4).
- 바. 토지분 재산세 감면방식을 특정하지 않아 적용상 혼란이 있던 부분을 명확화(안 보칙 제30조의2).

3.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기간 : 2005. 1. 30. ~ 2. 20 (20일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세법,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 도서관및독서진흥법, 농어촌정비법

○ 참고자료

- 신·구조문대비표
- 충청남도 세정과-7546, 9830, 11498 『시군세 감면조례 표준안』

계룡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룡시시세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의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 등급 1급 내지 7급,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급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조에서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가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등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 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제3조제1항중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을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로 한다.

제6조제6호중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를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규정에”로 한다.

제9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4(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한다.

1.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2.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7장 보칙중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을 적용) 이 조례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4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5. 1. 1부터 적용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관 련 법 령(발 취)

□ 지방세법

제9조 (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 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 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부칙

(2004. 1. 20법률 제07105호)

③(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광주민 주화운동, 광주민주유공자, 광주민주화운동사망자,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광주민주화운동희생자는 각각 이법에 의한 5·18민주화운동, 5·18민주유 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로 본다.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16조 (업무) ①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다음 각호의 업무 를 행한다.

1. 국내·외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 및 공중에의 이용
2. 국내자료의 제출관리
3. 다른 도서관과의 자료의 유통
4. 각종 서지의 작성 및 표준화와 국제표준자료번호제도의 운영
5. 전산화를 통한 국가문헌정보체제 및 도서관협력망의 총괄
6. 외국도서관과의 협력 및 자료의 국제교류
7. 다른 도서관 및 문고의 업무·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에 대한 지도·지원
8.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9. 도서관에 관한 조사·연구
10. 도서관 및 문고의 직원에 대한 연수
11. 기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②국립중앙도서관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25조 (법인등이 설립한 공공도서관의 등록) ①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공공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자료 및 사서직원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등록증을 교부한다.

□ 농어촌정비법 부칙

(2000. 1. 28. 법률 제6221호)

제4조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정주생활권개발계획 및 동계획에 의하여 시행하였거나 시행중인 정주생활권개발사업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생활환경정비사업개발계획 및 동계획에 의하여 시행하였거나 시행중인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본다.

참 고 자 료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 (생략)</p> <p>② <u>국가유공자등예우에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등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u></p> <p>1.~4.(생략)</p>	<p>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p> <p>② 「<u>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u>」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급 및 「<u>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등에 관한법률</u>」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 (이하 이조에서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가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등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p> <p>1.~4.(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p>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 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장 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 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 우에 한한다)하여(후단생략) 1.~4.(생략)</p>	<p>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 -----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 인의 배우자,----- ----- ----- -----하여(현행과 같음) 1.~4.(현행과 같음)</p>
<p>제6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1.~5.(생략) 6. <u>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16조의 규정</u>에 의 하여 등록된 도서관 7.(생략)</p>	<p>제6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1.~5.(현행과 같음) 6. 「<u>도서관 및 독서진흥법</u>」의 규정에 의하 여 등록된 도서관 7.(현행과 같음)</p>
<p>제9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① (생략) 1.~2.(생략) 3.<u>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어촌정 주생활권개발사업</u> 4. (생략)</p>	<p>제9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1.~2.(현행과 같음) <삭 제> 4. (현행과 같음)</p>
<p>제5장 (대중교통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신 설></p>	<p>제5장 (대중교통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제14조의4(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 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차정원 7인 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 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경 감한다.</p>

현 행	개 정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보 칙</p> <p><신 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규칙」 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2.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보 칙</p> <p>제30조의2(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을 적용) 이 조례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p>